

『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선우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의원연구단체의 구성(안 제3조)
 - 구성인원 : 5명 이상 (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 불가)
-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4조)
 -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기능 수행
-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(안 제7조 및 제9조, 제11조)
 - 연간 3개 이내의 단체로 제한
 - 활동기간은 등록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함
 - 당해연도 12월 15일 전까지 결과보고서 제출
- 연구단체의 지원(안 제12조)
 -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범위 내
 -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(각 연구단체별 300만원 이내)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

5. 검토의견

-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례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함임

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(지방의회의 의무 등)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